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6
----------	-----

2023. 10. 13.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북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가. 강남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체의 위탁기간 만료(2024. 2. 29.字)에 따라 구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의거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필요성

- 청소년시설 운영에 역량을 갖추고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강남청소년수련관

소재지	규모(m²)	현 위탁기간 - 수탁법인명 -	종사자 인원	1일 수용 인원	사 업 내 용
영동대로 131길 26	대지 : 2,277m² 연면적 : 1,975m² 지하1/지상3	'21. 3. 1. ~ '24. 2. 29. (최초위탁 : '93. 3. 1.) - (사)YWCA 연합회 -	12	289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봉사활동 등 ▪ 교육·문화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센터

※ 재위탁 사유 : 위탁기간 만료(2024. 2. 29.字)

마.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사. 수탁자 선정방법 : 청소년수련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동의안별 세부 내용의 검토

가. 구립강남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구립강남청소년수련관(이하 ‘강남수련관’)은 사단법인 YWCA가 수탁하여 운영중이나, 같은 법인과의 민간위탁기간 2024년 2월 29일자로 만료될 예정인 바, 이에 집행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5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표〉 강남청소년수련관 위탁시설 개요

위 치	규 모	설립일	위탁운영	시설장	종사자	1일 수용인원
영동대로 131길 26	대지 : 2,277㎡ 연면적 : 1,975㎡ 지하1/지상3	1993. 1. 26.	(사)YWCA 연합회(대표:이유림) 위탁기간 :21. 3. 1. ~ '24. 2. 29. (최초위탁 : ' 93. 3. 1.)	이종미	12	289

- 본 동의안의 위탁시설 개요를 감안해 보다면, 민간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시설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활용,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역삼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 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위탁 기간의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강남수련관에 대한 운영 계획과 주요 업무 방향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위탁업체 필요 역량을 가늠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수련관 민간위탁 성과 평가 수행 (23.6.28) 결과 ‘적정’ 기관으로 인정되었다고 함.(강남수련관 민간위탁 성과 평가 및 아동·청소년시설 점검 지적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1)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표〉 강남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실적

(기준 : 2023 1월 ~ 9월)

구 분 (프로그램수)	주요 프로그램	총 이용인원(명)			
		소계	유아	청소년	성인
4개 분야 54개 프로그램 79,943명		79,943	-	68,488	11,455
청소년 사업 (16개)	청소년자치활동사업(청소년운영위원회 등 6개) 청소년인성교육사업(봉사활동교육 등 6개) 청소년문화활동사업(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 등 4개)	36,674	-	36,674	-
학교폭력 예방센터 (11개)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사업(학교폭력예방교육 등 2개) 학교폭력예방문화 확산사업(학교폭력예방센터운영사업 등 4개) 학교폭력예방상담사업(상담 등 3개) 강사역량강화사업(학교폭력예방강사단 운영 등 2개)	17,975	-	17,829	146
교육문화 사업 (25개)	청소년 프로그램(종이공작나라 등 17개) 성인 프로그램(요가체조 등 8개)	21,229	-	9,981	11,248
지역주민 사업(2개)	청소년 지역주민사업(열린책방) 성인 지역주민사업(지역복지개발사업)	4,065	-	4,004	61

2 동의안에 대한 결론

- 민간위탁사업은 공행정이 맡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① 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의 합리화 도모, ② 공무원의 증원 수요 억제, ③ 대민서비스 향상, ④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⑤ 행정의 민주화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강남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한 위탁 사무 내역이 비권력적 사무이며,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보호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의 대상 및 민간위탁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 민간위탁사업은 공행정이 맡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① 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의 합리화 도모, ② 공무원의

증원 수요 억제, ③ 대민서비스 향상, ④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⑤ 행정의 민주화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지역사회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 파악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 기술을 발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금번 동의안이 채택한 ‘어린이회관 수탁기관 공개모집외 방식’이 ‘통상적인 공개모집 방식’에 비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6
----------	-----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가. 강남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체의 위탁기간 만료(2024. 2. 29.字)에 따라 구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의거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필요성

- 청소년시설 운영에 역량을 갖추고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강남청소년수련관

소재지	규모(㎡)	현 위탁기간 - 수탁법인명 -	종사자 인원	1일 수용 인원	사 업 내 용
영동대로 131길 26	대지 : 2,277㎡ 연면적 : 1,975㎡ 지하1/지상3	'21. 3. 1. ~ '24. 2. 29. (최초위탁 : '93. 3. 1.) - (사)YWCA 연합회 -	12	289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봉사활동 등 ■ 교육·문화 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센터

※ 재위탁 사유 : 위탁기간 만료(2024. 2. 29.字)

마.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사. 수탁자 선정방법 : 청소년수련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한다. <개정 2009.12.18>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1.09.23>

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 <개정 2009.12.18, 2011.09.23>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2015.07.10., 2022.5.6.>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